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역사내 구청 현장민원실 설치현황</li> <li>○ 사고(장애) 발생원인 분석자료</li> <li>○ 사상사고 원인분석 분석보고서</li> <li>○ 직원 승진기준 등 관련자료</li> <li>○ 사장 취임후 지시한 수입증대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추진실적</li> <li>○ 폐전동차 매각실태(최근 5년간)</li> <li>○ 폐침목 매각실태(최근 5년간)</li> <li>○ 2호선 전동차 외부광고 계약단가 조정 관련자료</li> <li>○ 동호철교 정밀안전진단을 감자기 실시하게 된 관련자료</li> <li>○ 당산철교 교체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및 증액사유에 대한 자료중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세부자료</li> <li>○ 환기구, 차수문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3회에 걸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내용과 조달청과 오간 공문서 사본</li> <li>○ 버스정류장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문서사본</li> <li>○ 보육시설 운영현황 자료</li> <li>○ 동호철교 보수·보강 관련자료</li> <li>○ 승차권 위탁판매 현황 및 문제점</li> <li>○ 광선부 교각공사와 관련하여 대한토목학회에서 보고한 연구보고서</li> <li>○ 군자기지 등 15개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자료</li> <li>○ 지하철공사 총직원 대비 남·여비율 현황</li> <li>○ '99년도 잠상인 단속요원수와 단속실적</li> <li>○ 현대, 신세계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"지하보상 추진계획" 세부 추진방침서 사본</li> <li>마. 도시철도공사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, 8호선 전동차 중정비 수의계약 입찰고시, 입찰결과 결재, 수의계약 방침, 계약서 사본</li> <li>○ 노사관계와 관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98, '99 이사회 개최현황 및 심의 내용</li> <li>- 한국전파관리국과 사용료 협정·정수내역</li> <li>- '97~'99 경력직 채용현황(전기관의 보직 및 전공·현보직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계별 개통에 따른 인력 충원계획</li> <li>- 단계별 노사관련 예산</li> <li>○ '99(현재까지)년도 공사의 홍보예산과 지출내역</li> <li>○ 정보화 사업관련 '98~'99자료</li> <li>○ 현대건설측과 소송관련 서류 일체</li> <li>○ 환기구 인상 관련 역별 공사내역 자료</li> </ul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의안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486</td> </tr> <tr> <td>번호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9년 12월 환경수자원위원회</p> <p><b>1. 심사경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12월 1일, 서울특별시장</li> <li>○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2일</li> <li>○ 상정일자 : 제17회 정기회 제7차 환경수자원위원회('99.12.27)</li> </ul> <p><b>2. 제안설명요지(환경관리실장 김우석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거 우리는 60~70년대의 경제개발 연대를 거치면서 성장제일주의,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서울의 환경도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.</li> <li>○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다음세대의 "삶의 질"까지도 고려하는 시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, UN경제사회이사회와 산하위원회인 국제연합지속발전위원회(UNCSD)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</li> <li>○ 새로운 위원회를 다시 만들기보다는 그 동안에 환경정책의 심의·대안제시 및 환경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해 온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확대·개편하여 기존의 기능과 함께 시정의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의 수립, 환경보전과 개발의 통합·조정 및 「서울의 제21」의 실천과 이행상황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자</li> <li>○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음.</li> </ul> <p>□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998년 7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부터 서울시 지속발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건의가 있어</li> </ul>	의안	486	번호	
의안	486				
번호					

<p>○ 서울시에서는 위원회의 신설보다는 녹색 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므로 그에 따른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음.</p> <p>○ 그에 따라 녹색위와 서울시가 함께 전문가 간담회('99.5.4) 및 시민토론회('99.6.1.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자 9명 등 100여명 참여) 등을 거쳐 조례개정 방향을 정하고</p> <p>○ 지속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을 위한 소위원회(위원장 박영숙 외 6명)를 구성하여 5차('99.8.25, 9.1, 9.29, 10.15, 11.5)에 걸친 회의와 토론 및 수정작업을 통해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, 녹색위 집행위원회에서 심의·검토한 바 있음.</p> <p>○ 또한 금년 11월 30일 서울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음.</p> <p>□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</p> <p>○ 첫째, 위원회에 「지속가능성평가 및 서울의 제21 실천 기능을 부여」하여 시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의 수립 및 친환경적 지침제시, 시장이 부의한 주요정책·계획·제도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·자문, 서울의 제21의 실천 및 추진상황 점검, 자치구 지방의 제21 추진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음.</p> <p>○ 둘째, 위원장을 현행 「위촉위원장 1인」에서 「시장과 위촉위원 2인(시민대표, 기업대표)」의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고, 위원의 구성은 현행 「위촉위원 100인 이내」에서 「시의 관련 실·국상을 포함한 100인 이내」로 변경하여 민·관·기업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실천력·추진력을 제고하도록 하였음.</p> <p>○ 셋째, 위원회 조직을 현행 「집행위원회 및 정책분과, 시민참여분과, 환경오염감시분과」에서 「집행위원회 및 서울의 제21 실천협의회와 지속발전정책분과, 환경홍보교육분과」로 개편하였음.</p> <p>○ 넷째, 위원회의 의견이 시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 필요시 관련과장은 지명위원으로 참여시키고, 기존의 사무국을 폐지하고 위원장이 사무담당위원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</p>	<p>를 처리토록 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토록 하였음.</p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남중) (총괄부문)</p> <p>○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하여 그 기능을 수행해 온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략의 수립, 환경보전, 서울의 제21의 실천 및 그 이행상황 점검 등 그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정구현은 물론,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.</p> <p>(세부사항)</p> <p>○ 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 환경정책심의, 대안제시 및 환경오염감시활동 등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'95년 11월에 100명이내 위촉위원으로 설치되어 현재 환경전문가, NGO대표, 언론인, 시민 등 67명 위원이 정책, 시민참여, 환경오염감시 등 3개 분과위를 조직·운영되고 있으며, 서울의 제21 작성 및 추진, 공모사업, 환경개선사업 등 주요활동을 하여 왔음.</p> <p>○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·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, 즉 공무원의 참여배제로 본래의 심의·자문 역할 미흡, 「서울의 제21」 추진을 위한 실천조직 부재로 추진미흡 등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요구되어 새로운 기구의 신설보다 현재의 「녹색서울시민위원회」를 확대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평가, 자문의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됨.</p> <p>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현행 「위촉위원장 1인」에서 「시장, 시민대표, 기업대표 등 3인의 공동위원장」으로 하고, 위원은 「위촉위원 100인 이내」에서 「시의 관련 실·국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」로 하며, 조직은 현행 「집행위원회, 정책분과, 참여분과, 감시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」에서 「집행위원회, 서울의 제21 실천협의회, 지속발전정책분과, 홍보·교육분과」등의 체계로 확대개편함으로써 실천 기능을 갖춘 추진력있는 분과위로</p>
---	---

<p>구성하였으며, 또한 위원회는 환경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의 협의회 및 2개의 분과위원회 정원 외에 별도 정원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8조의 2에 규정하고 있으나, 이 조항을 근거로 기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.</p> <p>○ 제1조(목적)에 환경오염 감시활동이 주요 목적중의 하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기능중 일부로 되어 환경오염 감시 활동의 축소나 경시 우려가 있고, 집행위원회 구성인원 25명 중 당연직위원으로 시공무원 7명이 자동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집행위원회가 서울시정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 기존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기본정신이 시민참여·자율이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됨.</p> <p>○ 동 조례개정안이 11월 20일~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1건의 의견도 없었다는 점과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듣도록 한다는 점에서, 또한 위원장 3인 공동체로 되어 책임소재의 불명확, 위원장간의 권한·조정상의 문제, 사무담당위원의 실질적인 유급직화 등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.</p> <p>4. 질의·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효지 : 생략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요지 : 없음(미구성)</p> <p>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</p> <p>8. 소수의견 : 없음.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</b></p> <p>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등 국제연합 지속발전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속가능("지속가능"이라 함은 지역개발 사업 등을 경제적 효과·사회적 형평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한 시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</li> <li>2.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부의한 주요 정책·계획·제도 등의 지속가능 평가·자문</li> <li>3.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, 자치구의제 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</li> <li>4. 환경개선·보전 프로그램 개발, 환경교육·홍보, 환경감시활동 등</li> </ol> <p>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중 "위원"을 "위촉위원"으로 한다.</p> <p>① 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환경관리실장·교통관리실장·시정기획관·산업경제국장·도시계획국장·건설국장·주택국장과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</p> <p>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각각 하며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 2인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는 시민을 대표하는 자 1인과 기업을 대표하는 자 1인으로 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3인과 감사 2인을 두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</p> <p>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의제 21실천협의회 회장과 2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되고,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5조(집행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</p>
---